

도 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5-46호

2015년 10월 5일 (월)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 Namdo

우)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 061-286-2073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3950호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51호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조례 제3952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53호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조례 제3954호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조례 제3955호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56호	전라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57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58호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59호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 훈 령

전라남도 훈령 제1343호	전라남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	-------------------------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0호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로 하고, 같은 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
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발행번호 제 호			발행번호 제 호			발행번호 제 호		
납부 자	주 소		납부 자	주 소		납부 자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세입과목		(관) (항) (목)	세입과목		(관) (항) (목)	세입과목		(관) (항) (목)
건 명			건 명			건 명		
금 액			금 액			금 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위 금액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은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		
20 . . .		수 입 일부인	○○은행 ○○지점		수 입 일부인	○○은행 ○○지점		수 입 일부인
○○사군수			사군 징수관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1호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④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되,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⑥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에 따른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처리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징수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 1,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 중 정 착 장 치 (어스앵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2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지방세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3호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3조제1호 라목”을 “제3조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의 규정”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과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이란 전라남도에서 도내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버스 운행정보 및 경영수지 분석 등을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전자신고”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운행정보 및 수입·지출 현황 등 회계 자료를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50조 제2항”을 “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전단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버스노선 정보

및 수입·지출 현황 등을 전자신고하고,”를 신설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운행에 따른”을 “운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거부할 때”를 “거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제9조의 제목 “(외부회계감사)”를 “(외부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송업체별 적자손실액을 산정한다.
-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한 자료를 대상으로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별,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한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을 “제1항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4호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기관·단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5호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에 따른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872 에 둔다.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교육
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 등

제4조(운영계획)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연수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신청으로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교육훈련) ①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연수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에 주 사무소를 둔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수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2. 연수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연수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관리자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시설변상책임) 연수생, 시설이용자,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망실하였을 경우는 수탁관리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시작 전 3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연수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시설사용료

<1박 기준>

(단위 : 원)

시 설 구 분	규모(평수)	금 액	비 고
대나무교육관 A동	30평	130,000	
대나무교육관 B동	30평	130,000	
대나무교육관 C동	20평	90,000	
대나무교육관 D동	20평	90,000	
대나무교육관 E동	14평	100,000	황토방
대나무교육관 F동 1층	17평	90,000	
대나무교육관 F동 2층	17평	100,000	
대나무교육관 F동 3층	17평	100,000	
한옥체험교육관	20평	160,000	한옥
관리사(성암관)	25평	100,000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6호

전라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하고, “규정함을”을 “규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따라”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에서 규정한”을 “에 따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무인비행장치로 최신 공간정보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를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으로 하고, 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7조에 의하여” 를 “법 제34조에 따라” 로 하고,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전라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를 “「전라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9조에 따라” 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전라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를 “「전라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공간정보의 제공 수수료(제20조제1항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수치지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금액 적용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물식품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7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농수산물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산물 및 물품을 말한다.
3. “전라남도 생산품”(이하 “전남산품”이라 한다)이란 전라남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물식품을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각종 전시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에 전남산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시장개척단의 활동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전남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사람 또는 업체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전남산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제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남산품 수출 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남산품의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수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전남산품의 수출 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바이어 등 제반 무역 정보에 관한 사항
4. 수출 유망 품목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남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남산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전남산품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전라남도 수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남산품 수출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남산품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전남산품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수출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출 중소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출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자문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전남산품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수출 기반 조성 지원) 도지사는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업체의 육성 및 유망 수출업체 지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출 보험금융 지원 등 수출 증대를 위한 제반 무역 진흥사업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내수 업체의 각종 수출전환 사업
7. 추천상품제 운영 및 해외인증 획득 등 인증 사업
8.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도지사는 전남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4. 판촉행사 개최 지원
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업자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인상 시상,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 등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

3. 그 밖에 수출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단체 및 수출업자 등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8호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41조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전라남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도 여성가족정책관 및 도 교육청 교육국장, 광주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 검사, 도 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이 장기 국외체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반기에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안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촉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법인 설립) ① 도내에 주소를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청소년 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도내에 둔다.

제14조(협의회의 사업)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
2. 국내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
4. 청소년 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사업

8.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 협의회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협조 및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제17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9.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59호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지방공사”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도,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3. 도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실장·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실장·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교, 연구원,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및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이 장기 국외체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관련 전문가 및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도의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20일까지 도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 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및 자료 제출) 제3조에서 규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고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 적용 대상 인원, 소요예산 등 다음연도 생활임금 산정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2016년도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결정하고 2015년 12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 10.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훈령 제1343호

전라남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정대행업소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측정대행업소의 적정 관리와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점검기관) 측정대행업소(이하 “대행업소”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제3조(지도·점검의 종류) ①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도지사는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소가 법 제18조의2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정대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환경부장관 또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한 경우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업소현황, 전년도 점검실적을 포함한다)
2.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
3. 지도·점검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4. 문제점 및 향후대책

제5조(지도·점검대상 업소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소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행업소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대행업소 1개 측정조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하여 지도·점검 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원 및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대행업소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해당 대행업소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행업소 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도·점검 공무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위반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지도·점검 공무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의 사본을 현장에서 해당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이를 대행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 실·국장(본부장)의 실인을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 실·국장(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사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적정여부
2. 시설 및 장비 보유기준 및 운영의 적정여부
3. 실험폐수 적정처리 여부
4.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여부
5.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6.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측정대행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7. 행정명령 이행사항
8. 그 밖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도지사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소 등록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도지사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행업소의 업무 수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측정대행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측정대행업소 등록대장

☐ 등록상황

상 호(명칭)		(전화번호)		
		종 별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기측정대행등록업 수질측정대행등록업 소음진동측정대행업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약 취 측정대행업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실험실소재지		면적(m ²)		
측정대행항목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실내공기질 : 약취 :		
측정대행구역				
기타참고사항				

☐ 종별 대 행 실적(횟수)

연 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약취

☐ 업종별 대 행 실적(횟수)

연 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약취

☐ 등록사항 변경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 행정처분 사항

일 자	위 반 내 용	처분명	기록자(인)

[별지 제2호 서식]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표

업 소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측 정 분 야		측정조수	
소재지	본 사		전화번호		
	실험실			면적	m ²

1. 기술능력 현황

성 명	기술자격명칭	자격증 번호	담당업무	임용일

2. 시설·장비 보유현황(등록 시설·장비 참고)

측정 대행항목	장 비 명	규 격	보유수량	비 고

3. 측정대행실태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환경오염 공정 시험방법 적용여부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거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고 있는가		
	대기(SO ₂ , 분진)측정시 공기비는 적용 하는가		
	시약 없이 측정항목은 없는가		
	시약 및 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규정액은 규정대로 조제사 용되고 있는가		
등록사항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은 없는가 (대표자,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측정 대행항목, 실험기 기 및 장비, 기술능력)		
	등록조건은 준수하고 있는가		
실험일지, 측정 기록부 등 적정 기록 및 보존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측정기록부 등은 적정기록 및 보존하고 있는가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측정의뢰인 에게 송부하고 있는가		
실험실	실험실은 갖추어져 있는가		
	전가하수도 및 실험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정도관리 및 교정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는 받고 있는가		
	계측기기의 교정은 제 때에 받고 있는가		
기술능력	기술능력의 결원은 없는가		
	기술능력의 자격증 대여자는 없는가		
	기술능력에 대한 자체 측정기술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측정기기	측정기기의 부속품은 있는가		
	측정기기의 유지관리 실태는 양호한가		
	측정기기는 실제분석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기타사항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을 완료하였는가		
	행정명령 등 제반 준수사항은 잘 이행하고 있는가		
	측정차량에 “공해도 검사” 등 과대표시는 되어있지 않은가		

4. 건의사항(대행업소)

5. 점검자 의견

6. 침 부

점검자 : 소속 직급 년 월 일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 관리대장

지급 일자	발급 번호	수령자	사용 일자	사 용 사업장명	사용자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지 도·점 검 기 록 부

(관리번호 :)

소재지

업종

[illegible]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측정대행 실적

1. 측정대행업체 현황

업체명	소재지	등록분야별						비고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2. 대행업소별 측정대행 실적

가. 사업장 규모별 측정횟수(대기/수질)

구분 \ 규모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대기						
수질						

<대기분야>

대행업소명 \ 규모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수질분야>

대행업소명 \ 규모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나. 사업장 구분에 따른 측정횟수(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대행업소명	규모별	분야 계			측정회수 연1회 이상 사업장			측정회수 연2회 이상 사업장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계										

다. 오염물질 항목별 측정횟수(기준초과/기준이내)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00분야]

(기준초과 횟수/기준이내 횟수)

항 목	계					
측정횟수						
항 목						
측정횟수						
항 목						
측정횟수						
항 목						
측정횟수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등 분야별로 작성